

대한국제법학회 수상 규정

2009년 9월 25일 제정

2010년 1월 7일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(이하 학회라 칭한다)의 각종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시상운영위원회)

- ①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 회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시상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. 다만 당해 연도 학회 총무이사과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며, 연구이사는 간사위원의 역할을 담당한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. 단 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
제2장 「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」

제3조 (자격)

「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」은 국제법학의 진작 또는 대한국제법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한다.

제4조 (후보의 추천과 선정)

- ① 학회의 이사 및 명예이사는 시상운영위원회에 「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②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매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회가 정한 양식에 따른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.
- ③ 시상운영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④ 시상운영위원회는 매년 1인의 수상자를 결정한다. 단 책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장 「현민국제법학술상」

제5조 (자격)

「현민국제법학술상」은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연구 업적이 우수한 회원 1인에게 수여한다.

제6조 (심사대상)

- ① 「현민국제법학술상」의 수여를 위하여 시상운영위원회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발간된 국제법 관련 논문 및 학술저서로서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한다. 저작물이 심사대상기간 내에 발간되었는지 여부는 공식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동 기간 중 발간된 국제법학회논총의 수록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.
- ③ 동 기간 중 발간된 기타의 저작물은 이사 또는 명예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.
- ④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매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회가 정한 양식에 따른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.
- ⑤ 시상운영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제7조 (선정)

시상운영위원회는 매년 1인의 수상자를 결정한다. 단 책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장 기 타

제8조 (시상)

「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」과 「현민국제법학술상」은 학회 정기총회시 시상한다.

제9조 (공로패 등)

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는 직무이사회 결정에 따라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폐지된 대한국제법학회 수상규정, 현민국제법학술상 규정,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상 규정을 대체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7일부터